

●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-56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13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

『방송법』, 『전기통신사업법』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감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방송법 제108조 등
-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
- 국세징수법 제2장 징수, 제3장 체납처분 등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의 3%(또는 5%)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,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,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)

(단위 : 원)

연번	위반법	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방송법	01781400045 30000227	(주)실버방송	109-81-77407 110111-249****	17,500,0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, 1008호(양정동, 롯데골드로즈)
2	전기통신 사업법	01781600045 30000240	(주)호아컴즈	144-81-09974 131111-033****	3,500,000	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, 302호(구로동, 벽산디지털밸리7차)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, 1205호 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터)
3	방송법	01781700045 30000068	주식회사 오씨비	107-87-26530 110111-419****	12,50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4-5, 정 연빌딩 4층 (역삼동 724-36) 경기도 김포시 운양로97번길 61(운양동 818-5)
4	방송법	01782000045 30000760	(주)한국여론방송	221-88-84229 110111-497****	10,000,00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, 17 층 (장항동 1791, 빛마루방송지원센터)
5	방송법	01781700045 30000091	(주)한국승마방송	214-88-34752 110111-400****	12,50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31, 301호 (논현동, 동남빌딩)
6	전기통신 사업법	01781800045 30011986	(주)위드디스크	338-87-00847 110111-*****	10,500,000	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, B동 1205호 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 터)